##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윤준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201

발의연월일: 2021. 1. 6.

발 의 자 : 윤준병 · 김수흥 · 기동민

안호영 · 임종성 · 김민철

인재근 • 이용빈 • 문진석

강병원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,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및 지위승계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7일이내에,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5일이내에 각각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, 그 기간 내에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(看做)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(안 제18조 등).

#### 법률 제 호

###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8항(종 전의 제6항) 전단 중 "제5항"을 "제7항"으로 한다.

- ④ 시·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⑤ 시·도지사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아니하면 그 기간(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)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.

제22조제1항 본문 중 "회사는 그"를 "회사가 종전의"로, "승계한다"를 "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,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5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·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"로 하고,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2항제1호 각목 외의 부분 중 "제18조제5항"을 "제18조제7항"으로 하고, 같은 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③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를 양수한 회사,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,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 또는 분할에 의하여 해당 사업의 전부를 승계한 회사가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신고를 수리해서는 아니 된다.
- 제22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 - ④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 - ⑤ 시·도지사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아니하면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(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)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.
  - ⑥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(제5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는 해당 사업의 전부를 양수한 회사,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,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 또는 분할에 의하여 해당 사업의 전부를 승계한 회사는 그 양도일,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종전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.
- 제22조의2제1항제1호 중 "제18조제5항"을 "제18조제7항"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 - ⑧ 시·도지사는 제7항에 따른 이전계약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⑨ 시·도지사가 제8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(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)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.

제39조제1항제1호 중 "제18조제1항·제3항·제4항·제6항"을 "제18조제1항·제3항·제6항·제8항"으로 한다.

제40조제1항제1호가목 중 "제4항"을 "제6항"으로 한다.

제53조제1항제1호 중 "제4항"을 "제6항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"제22조제3항"을 "제22조제1항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"제4항"을 "제6항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"제18조제6항"을 "제18조제8항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"제22조제3항"을 "제22조제1항"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)
① 제18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불식 할

부거래업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- ② 제22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- ③ 제22조의2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불식할부계약의 이전계약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8조(영업의 등록 등) ① ~ ③	제18조(영업의 등록 등) ① ~ ③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④ 시·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
	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
	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
	게 통지하여야 한다.
<u>&lt;신 설&gt;</u>	⑤ 시・도지사가 제4항에서 정
	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
	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
	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
	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(민
	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
	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
	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
	다)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
	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.
<u>④·⑤</u> (생 략)	<u>⑥</u> ・ <u>⑦</u> (현행 제4항 및 제5항과
	같음)
<u>⑥</u> 공정거래위원회는 <u>제5항</u> 에	⑧ 제7항
따른 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경	
우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	
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	
수 있다. 이 경우 선불식 할부거	
래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	

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제22조(지위의 승계) ① 선불식 제 할부거래업자가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선불식 할부거래업 자에 대하여 합병 또는 분할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를 양수한 회사,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,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 또는 분할에 의하여 해당 사업의 전부를 승계한 회사는 그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. 다만, 지위를 승계하는 자가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계할 수없다.

- ② 합병, 분할 또는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.
- 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회사의 상호, 주소 등 제18조제5항에 따른 정보공개

]22조(지위의 승계) ①
<u>회사가 종</u>
전의
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도
일,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5
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
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 도지
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<단서
삭제>
2
1
제18조제7항

사항

가. ~ 다. (생 략)

2. ~ 4. (생 략)

③ 제18조에 따라 등록한 선불 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를 승계 한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·도지사에 신고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\_\_\_

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 2. ~ 4. (현행과 같음)

- ③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를 양수한 회사, 합병 후 존 속하는 회사, 합병에 의하여 설 립된 회사 또는 분할에 의하여 해당 사업의 전부를 승계한 회 사가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 하면 신고를 수리해서는 아니 된다.
  - ④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.
  - ⑤ 시·도지사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(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)이 끝난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

<신 설>

제22조의2(선불식 할부계약의 이 저전) ① 선불식 할부계약을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(이하 "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"라 한다)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(이하 "이전계약"이라 한다)을 체결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한다.

1.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
자 및 선불식 할부계약을 이
전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
(이하 "이전받은 선불식 할부

것으로 본다
--------

⑥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(제5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는 해당 사업의 전부를 양수한 회사,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,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 또는 분할에 의하여 해당 사업의 전부를 승계한 회사는 그 양도일,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종전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지위를 승계한다.

세22조	:의2(선불식	할부계약의	0]
전)	①		
			- — —
			- — —
			- — —
	<b>.</b>		
1			

거래업자"라 한다)의 상호· 주소 등 <u>제18조제5항</u>에 따른 정보공개 사항

2. ~ 4. (생 략) ② ~ ⑦ (생 략)

<신 설>

<신 설>

제39조(시정조치) ① 공정거래위 제 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게 그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

<u>제18조제7항</u>
 2. ~ 4. (현행과 같음)
② ~ ⑦ (현행과 같음)
⑧ 시·도지사는 제7항에 따른
이전계약 신고를 받은 날부터 5
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
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⑨ 시·도지사가 제8항에서 정
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
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
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
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(민
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
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
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
다)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
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.
39조(시정조치) ①

入	۵Ì	-1	í
$\top$	ัง่	Ч	Γ.

- 1. 제18조제1항·제3항·제4항 ·제6항, 제19조, 제20조, 제22 조, 제22조의2, 제23조부터 제 26조까지, 제27조제1항·제3 항부터 제7항까지·제10항, 제32조, 제33조를 위반하는 경 우
- 2. (생략)
- ②・③ (생략)
- 제40조(영업정지 등) ① 공정거래 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
  - 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로서 제39조에 따 른 시정조치명령에도 불구하 고 위반행위를 반복하거나 시 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
    - 가. 제18조제3항 또는 <u>제4항</u> 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

1. <u>제18조제1항·제3항·제6항</u>
<u>• 제8항</u>
_
2. (현행과 같음)
②・③ (현행과 같음)
제40조(영업정지 등) ①
1
가 <u>제6항</u> -

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

나. (생 략)

- 2. (생략)
- ② · ③ (생 략)
- 제53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.
  - 1. 제18조제3항 또는 <u>제4항</u>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
  - 2. 제22조제3항 또는 제22조의2제7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
  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 - 1. 제18조제3항 또는 <u>제4항</u>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
  - 2. <u>제18조제6항</u>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
  - 3. (생략)
  - 4. <u>제22조제3항</u> 또는 제22조의2 제7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 니한 자

 나. (현행과 같음)
,
2. (현행과 같음)
②・③ (현행과 같음)
제53조(과태료) ①
1 <u>제6항</u>
<ul><li>2. 제22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 제7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 로 한 자</li></ul>
②
1 제6항
2. <u>제18조제8항</u>
3. (현행과 같음)
4. <u>제22조제1항</u>

5. ~ 10. (생 략)	5. ~ 10. (현행과 같음)
③ ~ ⑧ (생 략)	③ ~ ⑧ (현행과 같음)